

「평창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9. 26.
- 회부일자 : 2025. 10. 29.
- 상정일자 : 2025. 11. 3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 「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」 권고안에 따라 우리군도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 기준을 규정하여 의류수거함을 적정 관리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책무(안 제4조)
-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·관리(안 제5조)
- 운영·관리자의 업무 등(안 제6조)
-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에서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며,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3항에서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폐기물관리법」 제8조에서 생활폐기물을 군수 등이 마련한 장소나 설비에 버리거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버리도록 규정함.

나. 입법의 취지

-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우리 군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미관을 조성하려는 것임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에서 의류수거함 관리와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, 안 제4조에서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함.

- 안 제5조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·관리와 위탁의 근거를 규정함.
- 안 제6조에서 운영·관리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운영 관리자의 업무 보고와 교육, 관리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7조에서는 실태조사 및 평가에 대해, 안 제8조에서는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각각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16. 7. 25.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」 권고사항으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의류수거함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미관 저해 및 주민 불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와 정책적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※ 참고자료

국 민 권 의 위 원 회
의 결

의 안 번 호 제2016- 580호

의 안 명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

대 상 기 관 환경부, 국토교통부, 전국 기초자치단체

의결연월일 2016. 7. 25.

주 문

「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」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7조
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, 국교통부장관,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에게
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※ 【별지】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 (요약)

1. 근거 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7조(제도개선의 권고)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2. 추진배경

- 헌옷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불우이웃 돕기 등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이 수거하여 재활용.
- 하지만,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대다수 의류수거함은 불법 설치·운영.
- 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무분별한 설치 및 관리 미흡으로 민원발생.
- 이에 의류수거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·관리의 고도화를 통해 민원해소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화 제고.

3. 현황 및 문제점

- 폐의류 배출방법 및 의류수거함 설치근거 불명확
- 의류수거함 설치·운영·관리기준 미흡

4. 개선방안

- 폐의류 관련규정 명확화
-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
-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개선

5. 조치사항 (권고일자: 2016. 7. 25/ 조치사항 및 조치기간:2017.8.25.)

- 관계부처: 전국 기초자치 단체

세부개선과제	관계법령
○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	
의류수거함 설치방법 개선	「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개정 또는 가칭 「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 마련
의류수거함 운영·관리방법 개선	
의류수거함 관리부서 명확화	
의류수거함 관리 강화	
○ 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방법 등 개선	
공개경쟁제도 도입	「자원재활용에 관한 조례」 개정 또는 가칭 「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」 마련
의류수거함 운영업체 선정기준 마련	

□ **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**

제13조(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) ①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·보관·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매년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과 분리수거량 등을 조사하여 공표(公表)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□ **폐기물관리법**

제8조(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)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,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·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07.8.3., 2013.7.16., 2021.1.5.>

②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8.3., 2013.7.16.>

③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3., 2013.7.16.>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3.8.8., 2024.1.9.>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~ 아. (생략)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